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6] <신설 2024. 1. 18.>

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	율표			세율	
번 호	호 소호	품명	규격 등	(%)	한계수량
0303		냉동어류[「관세법」 별표에			
		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0304호			
		의 어류의 필레(fillet)와 기타			
		어육은 제외한다]			
0303	5	청어[클루페아 하렌구스(<i>Clupea</i>			
		harengus)·클루페아 팔라시			
		(<i>Clupea pallasii</i>)], 멸치[엔그라			
		울리스(Engraulis)속], 정어리			
		[사르디나 필차르두스(Sardina			
		pilchardus) • 사르디노프스(Sar			
		dinops)속], 사르디넬라[사르디			
		넬라(<i>Sardinella</i>)속], 브리스링			
		(brisling)이나 스프랫(sprats)[스			
		프라투스 스프라투스(Sprattus			
		sprattus)], 고등어[스콤버 스콤			
		브루스(Scomber scombrus)・			
		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(Scom			
		ber australasicus) · 스콤버 자			
		포니쿠스(Scomber japonicus)],			
		줄무늬 고등어(Indian mackerels)			
		[라스트렐리거(Rastrelliger)			
		속], 삼치[스콤버로모러스(Sco			
		mberomorus)속], 전갱이[트라			
		커러스(<i>Trachurus</i>)속], 줄전갱			
		이류[카랑크스(<i>Caranx</i>)속], 날			
		쌔기[라키센트론 카나둠(Rachy			
		<i>centron canadum</i>)], 병어[팜푸			
		스(<i>Pampus</i>)속], 꽁치[콜로라비			
		스 사이라(<i>Cololabis saira</i>)], 가			

		라지[데캅테러스(Decapterus) 속], 열빙어[말로투스 빌로서스 (Mallotus villosus)], 황새치[자 이피어스 글래디어스(Xiphias gladius)], 점다랑어[유티너스 아피니스(Euthynnus affinis)], 버니토[사르다(Sarda)속], 새치 류, 돛새치, 청새치[이스티오포 리대(Istiophoridae)]. 다만, 제 0303.91호부터 제0303.99호까지 의 식용 어류 설육(層肉)은 제 외한다.			
0303	54	고등어[스콤버 스콤브루스(Scom ber scombrus) · 스콤버 오스트 랄라시쿠스(Scomber australasi cus) · 스콤버 자포니쿠스(Scom ber japonicus)]	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 그램 이하인 것	0	20,000톤
0407		새의 알(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, 보존처리하거나 조 리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407	2	그 밖의 신선란			
0407	2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Gallus domesticus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0	수입전량
0803		바나나[플랜틴(plantain)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			
0803	90	기타	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.	0	150,000톤

0804		대추야자·무화과·파인애플· 아보카도(avocado)·구아바 (guava)·망고(mango)·망고 스틴(mangosteen)(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4	30	파인애플	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.	0	40,000톤
0804	40	아보카도(avocado)	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.	0	1,000톤
0804	50	구아바(guava) · 망고(mango) · 망고스틴(mangosteen)	망고(mango)(신 선한 것으로 한정 한다)	0	14,000톤
0805		감귤류의 과실(신선하거나 건 조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0805	10	오렌지	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.	10	5,000톤
0805	40	그레이프프루트(grapefruit)와 포멜로(pomelo)	신선한 것으로 한 정한다.	0	8,000톤
0811		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(조리 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 에 상관없다)			
0811	10	초본류 딸기		0	6,000톤
0811	90	기타	밤, 대추, 잣과 기 타 견과류를 제외	0	15,000톤

			한다.		
1202		땅콩(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, 껍데기를 벗겼 는지,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)			
1202	30	종자	꼬투리를 벗긴 것 (부수었는지에 상 관없다)	0	810톤
1202	4	기타			
1202	42	껍데기를 벗긴 것(부수었는지 에 상관없다)		0	
2002		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)			
2002	90	기타			
		1. 토마토 페이스트(paste)(가 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		0	수입전량
2007		잼・과실젤리・마멀레이드(mar malade)・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(purée)・과실이나 견과류 의 페이스트(paste)(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 지에 상관없다)			
2007	10	균질화한 조제품	견과류의 것은 제 외한다.	0	수입전량

2007	9	기타			
2007	91	감귤류의 과실		0	수입전량
2007	99	기타	견과류의 것은 제 외한다.	0	수입전량
2008	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 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
2008	20	파인애플		5	수입전량
2008	30	감귤류 과실	유자는 제외한다.	5	수입전량
2008	40	배		5	수입전량
2008	9	기타(혼합물을 포함하되, 소호 제2008.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 다)			
2008	97	혼합물			
		1. 과실 칵테일			
		가.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 에 넣은 것		10	수입전량
		나. 기타		5	
		2. 기타		5	
2008	99	기타			
I					

		6. 기타		5	수입전량
2009		과실·견과류 주스(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)·채 소 주스[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]			
2009	2	그레이프프루트(grapefruit) 주 스, 포멜로(pomelo) 주스			
2009	21	브릭스(Brix) 값이 20 이하인 것		0	수입전량
2009	29	기타		0	
2009	3	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			
2009	31	브릭스(Brix) 값이 20 이하인 것	레몬주스	10	수입전량
2009	39	기타	레몬주스	10	
2009	7	사과주스			
2009	71	브릭스(Brix) 값이 20 이하인 것		5	수입전량
2009	79	기타		5	
2009	90	혼합 주스			
		2. 기타	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	10	

2009	8	그 밖에 한 가지 과실·견과류 ·채소 주스			
2009	81	크랜베리(cranberry)[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(Vaccinium macro carpon)·바치니움 옥시코코스 (Vaccinium oxycoccos)] 주스, 링곤베리(lingonberry)[바치니 움 비티스-이다에아(Vaccinium vitis-idaea)] 주스		10	수입전량
2009	89	기타 1. 크랜베리(cranberry)[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(Vaccinium macrocarpon) · 바치니움 옥 시코코스(Vaccinium oxycoc cos)]와 링곤베리(lingonberry) [바치니움 비티스-이다에아 (Vaccinium vitis-idaea)] 이외의 과실 · 견과류 주스	코코넛 주스(코코 넛 워터를 포함한 다)와 기타 견과 류 주스는 제외한 다.	10	
2009	89	기타 2. 채소 주스		0	
2009	90	혼합 주스 1. 채소로 만든 것		0	수입전량